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세 58 호	의안 버동	제 58 호
--------	----------	--------

제 출 일 자	2004. 11. 15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04.1.13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원 근거와 범위를 일치시키고, 투자유치 대상 업종 및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제조업 중심에서 물류, R&D, SOC 등으로 확대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 가치서비스산업의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의 용어의 정의를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함
- 나.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절차 규정 신설
- 다. 상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금 지원과 조례에서 규정된 각종 보조금의 중복지원이 불가 하도록 규정 신설
- 라.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의 지원대상 범위와 사업비 및 운영비의 지원 절차를 명확하게 함
-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근거 신설
- 사.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면규정 신설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기획담당관실, 회계과

라. 기타

1) 신 · 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결과(2004. 10. 19 ~ 2004. 11. 10) 제출된 의견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제2호 및 제3호·제9조·제10조·제11조·제13조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법"으로 하며, 같은조제4호 및 같은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외국인투자가"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4호 및 같은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 대상, 융자 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의 제목 "입지 보조금"을 "입지 지원"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중 "외국인투 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 국인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를 "정상적인 분양가"로 한다.
-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2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14조제2항중"고용하기 위하여"를 "고용한 후"로, "실시하는"을 "실시한"으로

"월 50만원까지"를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로"로 하고, 같은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2 제목중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투자환경개선시설"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같은조제2항제3호 및 같은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조제2항제1호중 "외국인학교를 신규로"를 "초·중 등교육법 제6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로, 같은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2조제5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 안 에서 2억원 이내

제19조의1을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의 개정)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하며, 같은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u><신 설></u> <u><신 설></u>	4. "외국인투자가"라 함은 법 제2조제1 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2 조제5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①~②(생 략) 1. ~ 3.(생 략) <u><신 설></u> <u>4.</u> (생 략) <u><신 설></u>	제6조()①~②(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 대상, 융자 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융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방세 감면)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제9조()① <u>법</u>
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사천시세감	
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금융지원)외국인투자기업은 <u>외국인</u>	
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	
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u>외</u>	 제11조() ①번
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입지보조금) ①(생 략)	 제12조(입지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	<u> </u>
가의 차액 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u>정상적인 분양가</u>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	
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혅 했 개 정 아 제12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신 설> 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2조 내지 15조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3조(-----) ①-----제13조(고용보조금)①시장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③(현행과 같음) ② ~ ③(생 략)) 제14조(----) ①(현행과 같음) 제14조(교육훈련 보조금) ①(생 략) ②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20인이상 -----고용한 후-----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 --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로----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③(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신 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공공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 개발훈련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 학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혅 했

제15조의2(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제15조의2(----투자환경개선시설----) ①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와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외국인 학교(외국인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 2. 외국인 마을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 3. 외국인 마을에 필요한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등 ②(생략)
 - 1. 외국인 학교를 신규로 건립하는 때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 비용의 50퍼센트 이내
 - 2. 외국인 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 매입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2억원 이내
- 3.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2억원 이내,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1억원 이내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마을 시설로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 정 아

①--제2조제5호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삭 제>

<삭 제> <삭 제>

②(현행과 같음)

-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규정에 해당 하는 시설을--
- 2. 영 제2조제5항제2호 내지 5호에 해당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이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2억원 이내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1(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 ① 시장은 초기 투자액이 50억원 이상 이면서 도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범위 안에서 공장부지의 50%를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제반 사항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u>삭 제></u>
<신 설>	제19조의2(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 범위안에서 이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하며, 같은조제1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관계법령발췌

외국인투자촉진법

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4. "外國人投資"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外國人이 이 法에 의하여 大韓民國法人(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大韓民國國民이 영위하는 企業의 經營活動에 참여하는 등 당해 法人 또는 企業과 지속적인 經濟關係를 수립할 目的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法人이나 企業의 株式 또는 持分(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所有하는 것
- 나. 外國人投資企業의 海外母企業 및 그 母企業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出資 關係가 있는 企業이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에 貸付하는 5年이상의 借款
- 5. "外國投資家"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株式등을 所有하고 있는 外國人을 말한다.
- 6의2.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함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국가는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3.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일 것
 - 나. 사업과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일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 ⑤법 제2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 2.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 3. 약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국
- 4.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9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중 시·군· 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낙후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 제16조 (기업의 지방이전)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1. 인구밀도
 - 2. 광업ㆍ제조업의 출하액
 - 3. 그 밖에 광업ㆍ제조업사업체수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